

**성북구 석관동 124-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안)
대상지 철회 공람 · 공고**

우리구 석관동 124-42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(2023.11.27.)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, 다수의 주민이 반대 의견을 제출(2025.5~8.)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철회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23일
성 북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2025. 10. 23. ~ 2025. 10. 30.

나. 대상지 현황

- 위치 : 석관동 124-42번지 일대
- 면적 : 51,818.7m²
- 선정일 : 2023. 11. 27.

나. 공람사유 :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(안) 철회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수렴

다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(☎ 02-2241-2793)으로 의견서 서면 제출

석관동 124-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철회(안)

가. 사업예정구역별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토

1) 계획수립중 사업시행구역 제외, 대상지 철회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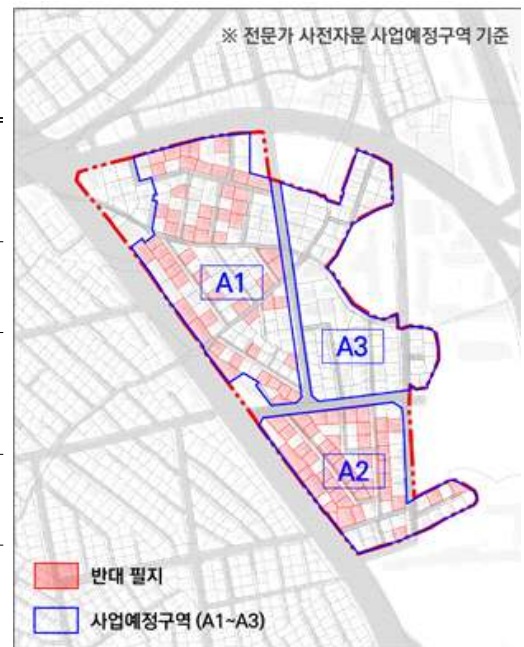
- 관련근거 : 「모아주택·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」
- 요건

- ①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% 또는 토지면적 1/3이상이 반대하는 경우
- ② 찬반이 첨예하여 區 철회 요청시 구역계 조정 또는 관리계획 수립 중단
- ③ 기타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절차 : 區 제외·철회 요청 → 전문가 자문(적정성 검토) → 결과통보

2) 사업 반대 현황

구 분		A1 사업예정구역	A2 사업예정구역
토지등 소유자	반대	54명 (19.93%)	40명 (40.82%)
	전체	271명	98명
토지 면적	반대	6,646.30㎡ (33.44%)	5,082.02㎡ (44.73%)
	전체	19,877.8㎡	11,360.4㎡
제외 및 철회 기준		충족	충족



※ A3사업예정구역은 반대동의서 미제출

3) 대상지 철회 사유

- 사업예정구역(3개구역) 중 2개 구역(A1, A2)의 반대동의율이 모아타운 철회조건에 해당되어 해당 구역을 제외하여 사업 추진 시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.

공 람 의 건 서

공 고 명 (사업명)	성북구 석관동 124-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(안) 대상지 철회 공람·공고			
의견제출인	성 명 (개인/단체)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
의견 내용

성북구 석관동 124-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안)
대상지 철회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제 출 인 (서명 또는 인)

성북구청장 귀하